

하지는 않지만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대상을 연상시키는 기호를 의미한다. 글썽의 연기는 누군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고, 풍향계는 바람의 방향, 수은주의 높이는 기온의 높낮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방문객이 왔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한 언어에도 지표성이 드러나는데, 우리 주위의 범위 안에 있는 사물을 가리킬 경우에 해당된다. 이를테면 말을 할 때의 공간과 시간적 위치는 다른 개체의 공간과 시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점이 된다. 따라서 '여기 있을게.', '지금 만나자.'라는 문장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에 의존한다. 이른바 '여기, 저기, 거기, 앞, 뒤, 오른쪽, 왼쪽'과 같은 지시 표현은 상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격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4

끝으로, ⑤상징성이란 기호의 형태와 의미가 문화적 관습이나 규약, 규칙에 의해 자의적 관습적으로 결합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은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을 '나무'라 한다. 즉 나무는 식물의 일종인 것이다. 이 나무를 [namu]라고 발음하고, 영어권 언중은 [tri:]라 하고, 중국 사람들은 '木' 이라 쓰고 [mu]라 발음한다. 이는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고, 단지 상징성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어떤 사물에 대한 구체적 말소리는 실제 나무와 어떠한 유사성도 없지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언중은 그 소리를 듣고 나무를 연상한다. 그런데 '나무'라는 언어 기호는 특정한 개별적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 전체가 지니는 공통적 특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데 이들의 유기적 연결고리는 매우 취약하다

5

언어인식학자들이 개념화한 언어의 성격들은 일정한 법칙을 통해 구조화 되어있다. 따라서 인지언어학의 구성 요소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전략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언어는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의 필연성을 이해할 때 좀더 명확한 인지 구조가 성립될수 있기 때문이다

1.<보기>1의 소쉬르를 통해 위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보기>2에서 맞는것만 고르다면?

<보기>1

표현되어진 기호가 시니피앙이라면, 시니피에는 그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호는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표시로 간주되며 사물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란 분리가능한 두 개의 요소, 즉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호 속의 발음을 시니피앙, 그 발음에 의해서 생기는 관념적 내용을 시니피에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 불가분의 개념을 언어의 본질로 규정하면서 기호와 사물의 관계는 우연적인 결합에 불과하다고 역설하였다. 소쉬르의 이러한 이론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구조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라캉Jacques Lacan은 시니피앙의 우위를 나타내며, 시니피앙과 시니피에 사이의 경계선에 결여가 있다고 하였다. 라캉은 언어적 예술에 있어서도 작품의 감각적 표현 양식과 내용의 관계가 이 같은 상호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기>2

ㄱ 소쉬르는 언어의 상징성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각 나라마다 기호와 속성이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ㄴ 소쉬르는 지표성에 있어서 각나라마다 부르는 지시적 단어의 기호적 결합구도가 다르다는점을 지적할수 있다
 ㄷ 소쉬르는 언어의 상징성이 예술 분야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①ㄱ ②ㄱ ㄴ ③ㄱ ㄷ ④ㄷ ⑤ㄴ

1

전통적인 의미에서 차별은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을 소수자로 낙인찍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주 국가의 헌법 질서에는 인권 보호의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도 선언적 의미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고용과 관련된 분야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하는 대표적인 규범 영역이다. 고용 관계에서의 차별 금지 역시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강조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교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존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입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

2

차별 금지 원칙 내지 평등의 개념은 고용 관계에서도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엇이 같은지를 제시해 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 원칙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장애인은 그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가 존재함에도 근로의 내용과 관련된 장애의 속성 때문에 근로자로 채용되는 데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용 관계의 근로 조건이 강행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별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달라진다. 강행 규정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그 차별의 시정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비교 대상자와 자신의 근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평등

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반면 개별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동일 조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도 있다.

3

차별 금지 법규가 강행 규정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영역에서도, 다시 차별 금지 법규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정도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남녀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규정’이 사용자가 설정한 임금의 결정 요소 중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임금 체계를 소극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의 보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위 규정의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남녀 간 임금의 결과적 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차별 금지 원칙의 보호 정도가 강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같은 근로관계라도 연령이나 학력·학벌에 따른 근로자의 차별 금지는 성별 등 전통적 차별 금지 사유들에 비하여 차별의 금지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고령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규나 원칙의 취지 역시 전통적인 차별 금지 사유의 취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노동 시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별 금지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노동 능력의 변화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므로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2.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C국은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 국가 모두 근본적인 차별 금지 원칙은 선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노동법 규정과 보호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국 가	강 행 규정	임금 정책의 구체적 내용 및 취지
A 국	있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임금 산정 체계를 소극적으로 수정함.
B 국	있음	노동 시장 구조상 여성의 노동 가치가 저평가되어 온 역사적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보상을 통해 남녀 간 임금의 결과적 평등을 도모함.
C 국	없음	남녀 동일 임금에 대한 강행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근로 계약과 시장 논리에 따라 임금을 결정함.

① A국과 B국은 모두 차별 금지 법규가 '강행 규정'으로 존재하므로, 두 국가의 여성 노동자가 받는 법적 보호의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② B국은 A국에 비해 차별 금지 원칙의 보호 정도가 더 강한 범주에 해당하며,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하려는 결과적 평등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③ C국에서 임금 차별을 겪은 여성 노동자는 자신과 비교 대상자의 근로가 동등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강행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즉시 시정받을 수 있다.

④ A국은 노동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근로자의 인권 보호보다 우선시한 결과로, B국보다 약한 보호 국면을 채택한 것이다.

⑤ C국의 임금 차이가 노동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성별 차별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 차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